

제 292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운영위원회(2026.3.20.)

조 례 안

검 토 보 고 서



의회운영위원회

[전문위원 최 영 미]

목 차

1	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
---	---------------------	---

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6. 3. 6.

나. 발 의 자: 신재화 의원 대표발의(11명)

(신재화, 이재운, 신중양, 신미정, 김향란, 최준규, 김홍섭,
표주숙, 이흥희, 박수자, 김혜숙)

다. 회부일자: 2026. 3. 6.

2. 제안이유

- 2027년 경남도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한시 기구인 「도민 체전기획단」 신설에 따라, 관련 사무를 담당할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의안 심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.
- 거창군의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군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거창군의회가 출석·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도민체전기획단을 추가함.
(안 제13조제2항제3호)

나. 거창군의회가 출석·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출연기관과 답변자를 규정(안 제28조의 2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
- 2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

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

라. 기타사항

- 1) 규제심사: 해당없음
- 2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26. 2. 5. ~ 2. 12.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3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조례 제정의 필요성: 필요

- 도민체전기획단 상임위 소관 규정, 출연기관 답변자 규정

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: 해당없음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

재정부담 여부(예산조치사항) : 해당없음

□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: 해당없음

□ 검토결과

○ 본 개정안은 ‘도민체전기획단’ 신설에 따라, 관련 사무를 담당할 상임 위원회를 정하고, 거창군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거창군의회가 출석·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
○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조 항	현 행	개 정 안
제13조제2항제3호 (산업건설위원회 소관)	안전건설국, 농업기술센터, 사업소	<u>도민체전기획단</u> , 안전건설국, 농업기술센터, 사업소
제28조의2 (출석·답변 요청의 범위)	(규정 없음)	의장 또는 위원장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거창군 출연기관 임직원에게 비의무적으로 출석·답변 요청 가능 - 대상: ① <u>거창문화재단 사무처장</u> ② <u>거창화강석연구센터 센터장</u>

○ 안 제13조제2항제3호에 도민체전기획단을 추가하여, 산업건설위원회가 도민체전 준비와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도록 함.

○ 안 제28조의2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거창군 출연기관 임직원에게 출석·답변 요청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군의회가 출연 기관 운영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.

○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체전 관련 의회 감독 강화, 출연기관 운영 점검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 신뢰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● 관련법령 발췌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적용 대상 등)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(이하 “출자·출연 기관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